

☎ 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36 / 전송(02)793-8702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재용(6540)/ 팀원 전지숙(6536)/ E-mail: kma-js123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6-13038호

시행일자 2024. 1. 8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추가운영 및 계도기간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-86 (2024. 1. 5.)

3. 질병관리청에서 ‘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’는 ‘23.12.31.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, ‘23년은 시행 첫해이고, 교육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자 **‘23년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을 추가 운영함**을 알려온바,

4.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계도기간 부여(일정)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귀 회 소속 산하단체 및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◆ ‘23년 안전관리책임자 추가 보수교육 일정’ ◆

가. 대상: ‘23년 보수교육 대상자(‘21년 12월 31일 이전 선임교육 이수자)
중 보수교육 미이수자

나. 일정: ‘24.1.14.(일), ‘24.1.18.(목)

*교육기관 별 각 2회 추가운영

교육기관명	한국방사선의학재단	대한영상치의학회
교육대상자	의사, 방사선사	치과의사, 치과위생사
교육홈페이지 (누리집 주소)	www.rs20.or.kr	www.dentalsafeimaging.or.kr
교육일정	'24년 1월 14일(일), 18(목)	'24년 1월 14일(일), 18(목)

- ※ 위 교육일정 외에 '23년 보수교육 미이수 대상자에 대한 추가 교육은 없으며, 계도기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'23.12.31.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의료법 제92조제3항 제2의2호*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.
- *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※붙임 : 질병관리청 관련 공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를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